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 및 관련 수가 적용대상 변경 안내

1. 보건복지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우리 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현장의 응급실 운영 지침 개선 요청에 따라 감염병 응급의료TFT(복지부-중앙응급의료센터-대한응급의학회) 논의를 거쳐 '**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**'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* 기존 지침 : 응급의료과-603(2021.2.1.), 응급의료과-3592(2022.8.1.)

< 주요 개정 내용(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) >

- 응급환자에 대한 "先 진료, 필요 시 後 검사"
 - **既**확진 응급환자 내원 시, 1인 격리병상(음압 또는 일반)에서 진료
 - 1인 격리병상 포화 시,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확진환자는 다인 격리병상(코호트 병상)으로 이동(의료기관별 상황에 따라 일반병상으로 이동도 가능)
 - **既**확진이 아닌 모든 응급환자 내원 시 일반병상에서 진료
 -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
 - 응급실에서는 **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**를 실시
-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(마스크 착용 불가능자는 제외)하여야 하며, 의료진은 환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리·감독 철저
 - 환자 간 감염 예방을 위하여 (일반)병상 간 간격을 1.5m 이상으로 유지

3. 해당 지침 변경에 따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격리병상(1인 격리병상, 다인 격리병상 포함) 격리관리로 수가 적용 대상 환자에서 **코로나19 의심환자는 제외됨**을 알려드립니다.

- 요양기관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시도별 지정된 중증 응급진료센터 중 음압·일반·이동형 격리병상(1인 격리병상 및 코호트병상*)을 운영하는 기관

* 응급의료과-3533(2022.7.28)

- 대상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- 대상 요양급여 목록 :

분류번호	코드	분류
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[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]		
응-6	V6001	가. 일반격리관리료
응-6	V6002	나. 음압격리관리료
응-6	JX999(코호트격리구역) JX999(이동식격리병상)	가. 일반격리관리료
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[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]		
중증응급진료센터	AH001	가. 일반격리관리료
중증응급진료센터	AH002	나. 음압격리관리료

- 적용일자 : 2022년 10월 18일부터 적용
- ※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.11.1부터 가능

4. 각 시·도는 상기 사항을 관할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고, 향후 응급의료기관 관련 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 지침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대한응급의학회,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립중앙의료원장, 서울특별시(보건의료정책과장), 울산광역시(식의약안전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보건정책과장), 경기도지사(보건의료과장), 강원도지사(공공의료과장), 충청북도지사(보건정책과장), 충청남도지사(보건정책과장), 전라북도지사(보건의료과장), 전라남도지사(식의약과장), 경상북도지사(감염병관리과장), 경상남도지사(식의약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보건건강위생과장), 부산광역시(보건위생과장), 광주광역시(감염병관리과장), 대구광역시(보건의료정책관), 인천광역시(보건의료정책과장), 대전광역시

주무관 공혜주 행정사무관 이지연 응급의료과장 전결 2022. 10. 17. 김은영

협조자 보건사무관 조영대

시행 응급의료과-4820 (2022.10.17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(어진동)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553 팩스번호 044-202-3930 / khj24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